

# 학술연구운영위원회규정

개정: 2024.09.01.

제1조 (명칭) 본 위원회는 경희대학교 학술연구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위원회는 경희대학교 교원의 창의적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대학의 효과적 연구지원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교무처장, 연구부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된다.

③ 부위원장은 연구부처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 (심의 · 의결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중·단기 연구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(교내연구과제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)
2. 연구과제의 선정, 평가 및 연구비 배정, 지급 중단 등 관리에 관한 사항
3. 연구비 지원을 위한 교원 및 부설 연구소의 연구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4. 연구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
5.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센터 신설 · 폐지, 규정 심의,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
6. 타 부서에서 심의를 의뢰한 사항
7. 기타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항

제5조 (전문평가위원) ① 위원장은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교내·외 전문가 중에서 전문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전문평가위원의 임기는 전문평가위원의 평가의견서 제출 시까지로 한다.

③ 전문평가위원에게는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촉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간사) ① 연구처 연구진홍팀장은 간사가 된다. 단, 연구진홍팀장이 없을 때 연구처 내 차상위 직위를 가진 정규직 직원이 간사가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기록, 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부	칙
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본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